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40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김민전 · 최보윤 · 고동진
윤한홍 · 김대식 · 김태규
구자근 · 송언석 · 조지연
이달희 · 안철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

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선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생략)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視覺障礙로 인하여 자신이記票를 할 수 없는選舉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u>. 이 경우 해당 선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투표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u> ⑨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u>
<신설>	

⑨ (생 략)	<u>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u> <u>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이</u> <u>경우 해당 선거인이 중앙선거</u> <u>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특수투표용지의 사용</u> <u>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투</u> <u>표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